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27.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성	1999.6.1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정당한 사유 없이 1. 2차 출석통지일에 미출석 1차 출석통지: '26.6.15. 2차 출석통지: '26.6.29.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②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25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8.27. ~ 2026.9.10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현경(Tel. 031-739-318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